제816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국토교통부)	1.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신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적용 * 입주자격(소득, 자산), 거주기간(30년), 가구원수 별 적정 공급면적	1.비중요
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고용노동부)	1.명단공표 기준 의무고용률 상향(강화) ○명단공표 기준 ▲공공기관 : 50인 이상 기관, 1년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100% 미만	1.비중요
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 기준(신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료 중 특정 성분 및 그 특정성분 함량의 제한 기준을 신설함	1.비중요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1.전자입찰 적용 확대(강화) 적격심사제까지 전자입찰 방식 확대 2.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 범위 확대(강화)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로 범위 확대 3.입찰공고 내용 등의 동별 게시판 게시 추가(강화) 동별 게시판 게시를 추가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입찰시간 축소(강화) 입찰서 제출 마감을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하고, 개찰가능시간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개선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법무부)	1.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강화)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법인 사업자 (자산총액 5억원 이상 회사) -자산총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회사 추가	1.비중요
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입찰시간 축소(강화) 입찰서 마감시간과 개찰가능시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제출마감 시한에 임박해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가능성에 대응하는 등 운용상 어려움 해소(기존 : 18시 → 개정 : 17시)	1.비중요
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신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의 세부사항을 규정	1.비중요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보증 미가입시 등록말소 요건(강화)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2.임대사업자의 설명·확인사항 추가(강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추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가	
9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본인 일치 여부 확인의무 신설(신설) ㅇ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하는 승객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ㅇ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1.비중요
1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신설)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취소사유 규정	1.비중요
1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사유(신설) ㅇ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고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경찰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연안국 소속 군·경찰 함정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상기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은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위반 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진입하는 경우,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 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대피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선원·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개인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출입·점검 규정(신설) ○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받는 경우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환경부)	1.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유효기간)(신설)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31일로 연장함	1.비중요
13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유효기간 연장(강화) ○ 유효기간 연장(부칙제2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을 당초 '21.12.31.에서 '22.1.31.로 연장함 ※ 유효기간 연장사유 ㅇ '21.10.15. 中 정부의 요소 수출전 검사 시행으로, 중국 수입 의존도 97%('21.9월 기준)에 달하는 국내 산업용 요소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요소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제정·시행 ㅇ 그간, 민관의 노력으로, 對中 기계약 물량 확보 및 요소 수입국 다변화 등을 추진하여, 국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 시장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점, 해외 주요국 들도 요소수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1개월 연장함	
1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강화)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이미녹타딘(Iminoctadine) (현행과 같음) 레몬 0.2 (2) ~ (8) (현행과 같음) (9) 델타메트린(Deltamethrin)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현행과 같음) 딸기 0.05 (10) ~ (28) (현행과 같음) (29)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생 략) 더덕 0.05 (30) ~ (54) (현행과 같음) (55) 뷰프로페진(Buprofezin) (현행과 같음) 멜론 0.5 (56) ~ (65) (현행과 같음)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 같음) 멜론 0.05 자두 0.3 표고버섯 0.2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현행과 같음) 양파 0.05 (68) ~ (70) (현행과 같음) (71) 아미트라즈(Amitraz) (현행과 같음) 아로니아 0.05 (72) (현행과 같음) (73) 아세페이트(Acephate) (현행과 같음) 강낭콩 0.05 녹두 0.05 팥 0.05 (74) ~ (111) (현행과 같음) (112) 카벤다짐(Carbendazim) (현행과 같음) 고추냉이(잎) 0.7 콜라비 0.05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13) (현행과 같음) (114) 카보퓨란(Carbofuran) (현행과 같음) 대두 0.05 (115) ~ (162) (현행과 같음) (163)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현행과 같음) 해바라기씨 0.05† (164) ~ (169) (현행과 같음) (170) 펜토에이트(Phenthoate) (현행과 같음) 갯기름나물 3.0 머위 3.0 참나물 3.0 치커리 3.0 (171) ~ (199) (현행과 같음) (200) 헥사코나졸(Hexaconazole)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현행과 같음) 옥수수 0.05 (201) ~ (206) (현행과 같음) (207)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현행과 같음) 무화과 1.5 보리 0.07 (208) ~ (219) (현행과 같음) (220)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현행과 같음) 블루베리 1.0 (221) ~ (223) (현행과 같음) (224) 사이목사닐(Cymoxanil) (현행과 같음) 우엉 0.05 우엉잎 0.05 (225) ~ (226) (현행과 같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현행과 같음) 고구마 0.05 패션프루트 0.07 (228) ~ (233) (현행과 같음) (234) 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현행과 같음) 당귀(잎) 4.0 (235) ~ (236) (현행과 같음)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현행과 같음) 신선초 2.0 모과 0.1 (238) ~ (250) (현행과 같음) (251) 에톡사졸(Etoxazole) (현행과 같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레몬 0.7 아욱 4.0 토란 0.05 토란(줄기) 0.2 (252) ~ (324) (현행과 같음)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현행과 같음) 더덕 0.15 (326) ~ (337) (현행과 같음) (338)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현행과 같음) 근대 4.0 당귀(잎) 4.0 생강 0.05 아욱 4.0 (339) ~ (385) (현행과 같음)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현행과 같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마 0.05 살구 0.5 오미자 0.2 (387) ~ (392) (현행과 같음) (393) 메트알데하이드(Metaldehyde) (현행과 같음) 양배추 0.05 (394) (현행과 같음) (395)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현행과 같음) 무(뿌리) 0.05 (396) ~ (398) (현행과 같음)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현행과 같음) 어수리 20 (400) ~ (415) (현행과 같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Chlorantraniliprole) (현행과 같음) 무화과 0.2 (417) ~ (438) (현행과 같음) (439)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현행과 같음) 고구마 0.2 (440) ~ (457) (현행과 같음)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 (현행과 같음) 치커리(뿌리) 0.15 (459) ~ (468) (현행과 같음) (469)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현행과 같음) 땅콩 0.09†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70) ~ (517) (현행과 같음) 주1. ~ 주9. (현행과 같음)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외국인 소유 용기의 수입 전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제출 의무화(신설) ㅇ 검사 생략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용기의 검사권자에게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간 안전 조치(신설) ㅇ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간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 3.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신설) ㅇ 국내용도의 부탄캔 제조 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1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조건부 사용 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강화) 제3조의3 - (제1항) 부작용 보고 - (제2항) 안전성 평가 - (제3항) 사용 중단 - (제4항) 미보고시 사용 중단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추가(신설) o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강화(안 제26조의2) - (현황) 제1종 평가업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측정업무를 재대행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에 평가개요 및 평가 업무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개선)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에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2.행정처분기준 강화(기초자료 미보존시 및 평가기술자)(강화) ○ 환경영향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 (현행)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업무정지6개월) - (개선) : 1차(업무정지1개월), 2차(업무정지 2개월), 3차(업무정지4개월), 4차(업무정지6개월) ※ 거짓부실의 처분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단순한 부주의 등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감경할 수 있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 평가서 거짓작성과 부실작성 시 동일한 행정처분기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거짓작성은 강화하고 부실작성은 현행유지 - (현행) : 거짓 및 부실작성 모두 동일하게 적용 * 1차(인정정지 6개월), 2차(인정정지 12개월), 3차(인정정지18개월), 4차(인정정지24개월) - (개선) : 거짓작성은 강화, 부실작성은 현행유지 · (거짓작성) 1차(인정정지 9개월), 2차(인정정지 18개월), 3차(인정정지 24개월), 4차(인정취소) · (부실작성) 1차(인정정지 6개월), 2차(인정정지 12개월), 3차(인정정지18개월), 4차(인정정지24개월)	
18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기획재정부)	1.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신설) 적용기간 연장('21.12.31.->'22.1.31.일로 1개월 연장)	1.비중요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배아생성의료기관 준수사항(강화) 1. 생식세포(정자,난자) 보관을 위해 채취 시에는 생식세포 동결동의서를 받도록 서식 신설함 2.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잔여배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기관마다 상이한 관리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관 운영지침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침상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2.기관위원회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강화) - 기관위원회 설치 시 제출 서류에 연구수행자, 연구공간, 연구내역 등을 첨부하도록 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8.비중요 9.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기관위원회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함 3.유전자검사기관 신고 기준(강화) 유전자검사의 목적을 5가지로 분류하고, 분류된 목적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차등화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 4.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신설) 유전자검사기관 정확도 평가를 숙련도 평가로 개정하고, 숙련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기준 및 절차(신설)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함 6.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관리(신설)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심의규정 -오도할 우려 및 검사대상자 보호방안등에 대한 자료 제출 -항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 결정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7.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내용 및 방법(신설)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명시하고, 업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8.유전자검사 서면동의 범위(강화) -유전자검사 목적에 관한 사항, 동의받은 목적 외 얻어지는 정보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규정 -유전자검사기관 휴업 또는 폐업시 대상물 비롯하여 그 기록물 처리(이관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 9.유전자검사기관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 폐기 등 절차(강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 또는 폐업시 검사대상물 및 그에 따른 기록물을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여성가족부)	1.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1.비중요